

발 간 등 록 번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6.1.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7호, 2015.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6.9>

-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1>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제20조 삭제 <2009.6.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2, 2015.1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3.6.12>

⑤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6.12>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6.9]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5.1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6.12>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6.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6.12>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6.12>

[전문개정 2009.6.9]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8.6>
-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09.6.9]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6.12>
-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6.9]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9.6.9]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12.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전문개정 2009.6.9]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2>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09.6.9]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13.6.12]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5.22>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 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40조 삭제 <2009.6.9>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6.9]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5.12.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용자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5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6조(「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6조의2(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6.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2009.6.9]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6.9]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삭제 <2013.6.12>
2.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의 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6.12>
4. 삭제 <2013.6.12>
5. 삭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6.12>

1.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6.9]

부칙 <제7043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2호,2005.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5호,2006.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3> 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9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부칙** <제11879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52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7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7.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0.5.18]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 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1>

[전문개정 2010.5.18]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2013.12.11, 2014.7.14, 2014.7.16>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12.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
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1>

[제목개정 2010.5.18]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1.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0.5.18]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10.5.18>

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5.18]

제8조(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13.12.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8, 2013.12.11>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5.18>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2010.5.18, 2013.12.11>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
 -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만한다)
3. 삭제 <2013.12.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5>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5.18]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제목개정 2010.5.18]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5.18>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6항제3호에서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목개정 2010.5.18]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0.5.18]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제16조 삭제 <2010.5.18>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전문개정 2010.5.18]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②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5.18>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전문개정 2013.12.11]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5.18>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 인·허가 보증
2. 시설·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행위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 [전문개정 2010.5.18]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출력 및 검색·확인 조치
 -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9장 벌칙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부칙 <제18666호,2004.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9828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호,2007.6.29> (농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244호,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89호,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28호,2007.1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477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80호,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1184호,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64호,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415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3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2014년 6월 13일
2.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2014년 3월 1일
3. 별표 3 제2호마목2): 2015년 1월 1일

제2조(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받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환경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3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3.12.1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2] 삭제 <2007.12.28>

[별표 3] <개정 2013.12.1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text{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times 100/100$$

-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 평점} \times 20/100$$

-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 2)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배 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순환골재판매액}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times \text{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times 20/100$$

-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times \text{신인도반영비율}$$

-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

한 자의 경우: +2퍼센트

나)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퍼센트

[별표 4] <개정 2013.12.1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5천만원	1억원
나. 그 밖의 사항에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억원
1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	—
16.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

[별표 5] <개정 2013.1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mall>법제처</small>	법 제66조제1항 제1호		68	

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법제처	70			국가법령정보센터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500	700	1,000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 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2호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 만인 경우		300	500	700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 상인 경우		500	700	1,000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 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 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500	700	1,000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500	700	1,000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 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 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500	700	1,000	

경우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 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 지 않게 입력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	50	70	100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2호	50	70	100	
파.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3호	50	70	100	
하. 법 제21조제6항제3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500	700	1,000	
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 우	법 제66조제2항 제6호	100	200	300	
너.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500	700	1,000	
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한 경우 법제처	법 제66조제1항 제9호	500	700	1,000	

한 경우					
서.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4호	50	70	100	
어.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9호	100	200	300	
처.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5호	50	70	100	
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2호	300	300	300	
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1호	100	200	300	
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	1,000	1,000	1,000	
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6호	50	70	100	
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7호	100	100	100	
노.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2호	100	200	300	
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법 제66조제1항 제14호	500	700	1,000	

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16호			
소.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 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 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2항 제15호	100	200	300
오.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7호	500	700	1,000
조.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8호	50	70	1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 [환경부령 제00581호, 2014.12.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2. 최종처리: 매립

[본조신설 2010.6.9]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6.9>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2013.12.13>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2.13]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본조신설 2013.12.13]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5, 2010.6.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7.1.9, 2008.12.31>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료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영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용역이행능력평가액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6.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현황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7.12.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0.6.9>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목개정 2010.6.9]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9]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9]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6.9]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6.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13.12.13>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12.13>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12.13>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추는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 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 다. 폐기물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 라. 바닥포장
 -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12.13>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9, 2013.12.13>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 따른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6.9, 2013.12.13>

⑧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6.9, 2013.12.13>

[제목개정 2010.6.9]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1.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3>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3>

⑤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12.13>

⑥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3>

[전문개정 2010.6.9]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6.9]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6.9]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0.6.9]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10.6.9]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13.12.13>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제목개정 2010.6.9, 2013.12.13]

제17조 삭제 <2007.1.9>

제18조(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9]

[제목개정 2013.12.13]

제19조 삭제 <2010.6.9>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목개정 2010.6.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6.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하는 분진의 흘날림을 방지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목개정 2010.6.9]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③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

야 한다.<개정 2010.6.9>

[제목개정 2010.6.9]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 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②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1.9, 2010.6.9>

[제목개정 2010.6.9]

제2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휴업·폐업의 경우
 -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휴업·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1.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9>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10.6.9>

제28조(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 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07.12.31, 2010.6.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8.3.3, 2010.6.9, 2013.3.23 >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10.6.9>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9]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9]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9]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6.9]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2.25]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2.6.15>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3항에 따른 배출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치신고·변경승인·변경신고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6>
- [본조신설 2014.4.30]

제33조 삭제 <2008.12.31>

부칙 <제169호, 2005.1.19>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 (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류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③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8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 (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 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22>생략

부칙 <제226호,200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7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7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201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00호,201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9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제3조의2 관련)

분 류	분류번호	종 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록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 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관련)

1. 공통사항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아.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의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 ²)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 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 팔호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페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추어야 한다(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량시설 : 1식 이상

(8)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9)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다.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라.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마. 제2호가목(1), (2), (6)~(8)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0.6.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제10조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 다.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별표 2의3] <신설 2010.6.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경우,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5조제1항 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법 제25조제1항	허가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취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의2호	허가 취소			
6)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허가 취소			
7)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호	경고	허가 취소		
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호				
가) 중간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임시보관장소 승인가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9)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0)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 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	법 제25조제2항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6호		1월	3월	6월
13)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6) 법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7) 법 제21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0호				
가)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8)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9)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0)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 제1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4)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7호	영업정지 1월			
25)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비 고

21)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관련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1 차	2 차	3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	법 제25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에 반입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경고	승인취소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승인취소		
4)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1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2호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반입정지 6월
6)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4항제3호	경고	반입정지 1월	반입정지 3월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13>

(제1쪽)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발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

시·군·구별	합계	불연성								가연성				가연성·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 폐재류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단열	혼합건설 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 폐토석												
계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군·구별	발생 및 처리방법	합계	불연성										가연성				가연성·불연성 혼합			기타
			건 설 폐 재 류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단열	혼합건설 폐기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블록	폐기와	건설 폐토석												
계																				
	발생량																			
	처리 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보관 량	누적																		
이월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²)

(제2쪽)

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군·구 별	합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계																

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

시·군·구 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일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외 허가현황	임시보관장 보유여부 [용적(㎡)/ 중량(톤)]	비고
					계	5톤 미만	5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5톤 미만	15톤 이상					
계														

(제3쪽)

나. 중간처리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부지면적 (㎡)	보유 (협약) 기술	자체수집 운반차량	파쇄시설			모래 생산 시설 보유 여부	순환골재 생산규격	1일처리 능력 (허가 용량/실가동량)	허용 보관량 (보관 일수)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 일자	비고
								1차	2차	3차 이상							
계																	

(제4쪽)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톤/년)	
시·군·구별	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 오니	폐 금속류	폐 유리	폐 타일 및 페도자기	폐 목재	폐 합성 수지	폐 섬유	폐 벽지	폐 보드류	폐 판넬	혼합건설 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벽돌	폐 블록	폐 기와	건설폐 토석														
계																						
	순환골재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관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제용																				
		퇴매우기 및 릿채움용																				
		성토용·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보관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블록																				
		벽돌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보관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13>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

신청인	①수집·운반업 허가번호	②수집·운반업허가기관
	③상호(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성명(대표자)	⑥생년월일
	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⑧설치예정지					
⑨보관량			⑩보관기간	⑪수집구역	
건설폐기물 종류	용적(㎡)	중량(톤)			

⑫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⑬신청(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 제4조제4항

임시보관소의 [] 설치승인 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나.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라.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마.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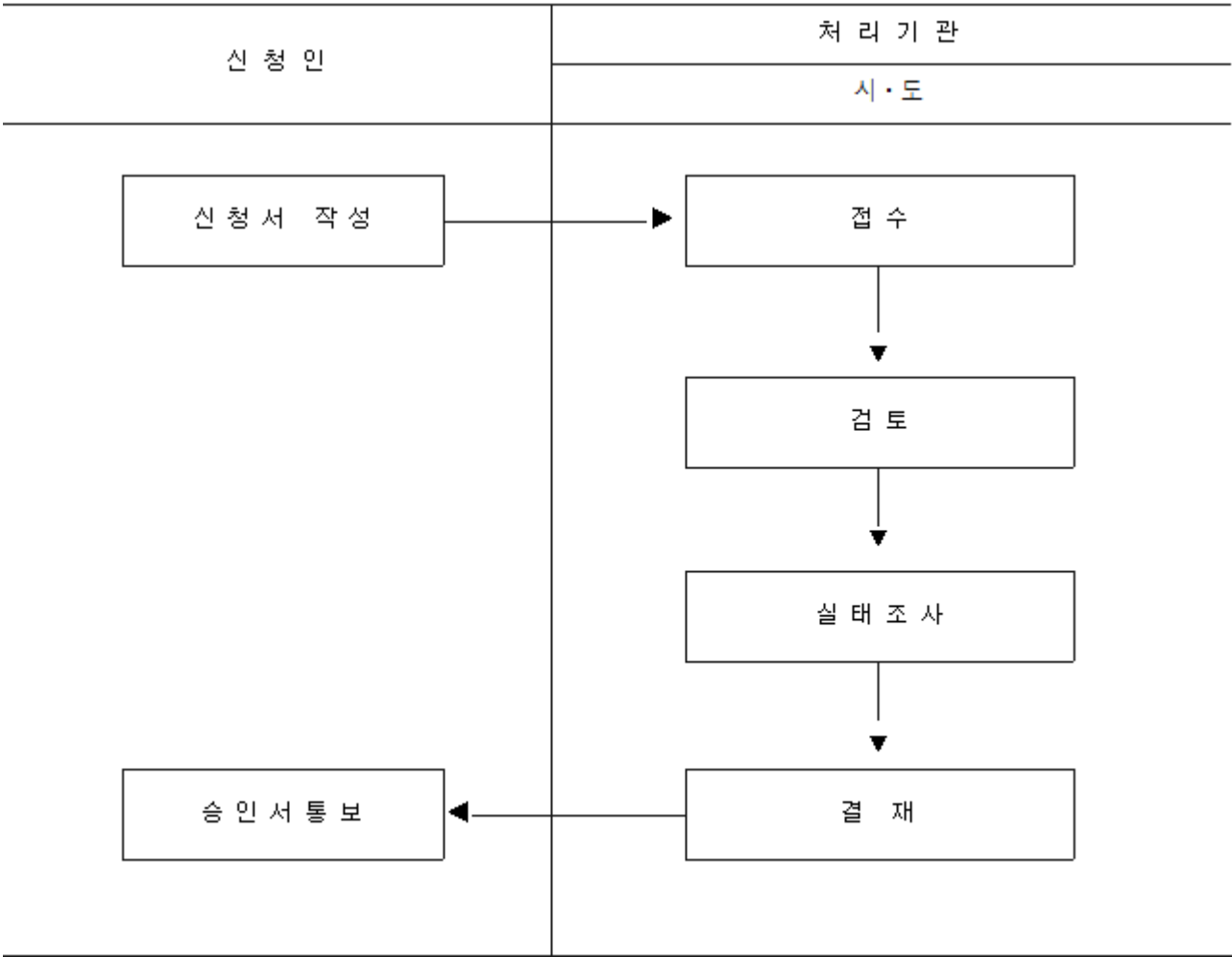
작성 방법

- ①번부터 ⑦번까지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⑧번은 보관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의 용적과 종량(비중을 적용하여 산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⑩번은 시·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톤)	금액(천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1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1부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	---

210mm×297mm[택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전화번호:)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6.9>

순환골재 판매내역서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⑥생산시설 현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일		설치완료일	
⑦순환골재 생산내역							
순환골재 용도		생산량			인증여부		
⑧순환골재 판매내역(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 톤, 천원)							
일련 번호	판매처		계약수량		기성수량		계약기간
	성명(상호)	주소	계약량	계약금액	기성량	기성금액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 [] 계획서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	------	------	------	----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⑬건설폐기물 종류별 · 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⑭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⑮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⑯건설폐기물의 종류	⑰배출량 (톤)	⑱운반		⑲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⑳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㉑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㉒변경 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에 따라
[] 제9조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 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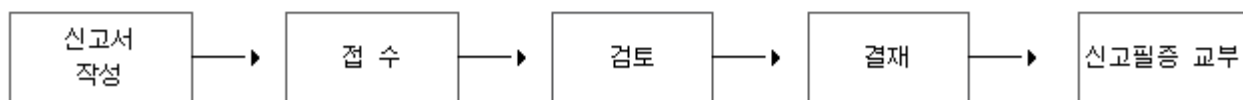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작성 방법

1. ⑤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⑭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⑮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⑯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인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⑰란의 "처리구분"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팔호 안에 파쇄·소각·중화·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시·군·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13>

(알 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사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	운반		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 120g/㎡]

(뒤 쪽)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시설명	처리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의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6.9>

(앞 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트럭=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종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 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m²)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 항목

- 가. 배출자는 ①부터 ⑩까지 및 ⑭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⑮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 나. 운반자는 중간·최종 처리자로부터 ⑮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 다. 중간·최종 처리자는 ⑨부터 ⑬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⑮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번호: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나. ②·⑪ 및 ⑬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 ③업소명, ④소재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라. ⑤건설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별표 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바. ⑦위탁량: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아. ⑨해당 건설폐기물을 중간·최종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 ⑩업소명, ⑫소재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차. ⑬차량종류: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는 경우 ⑩부터 ⑬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카. ⑮수집·운반차량중 번호: 시·도지사가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중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타. ⑮업소명, ⑮사무실소재지, ⑮시설소재지, ⑮시설명: 중간·최종 처리자의 업소명, 중간·최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최종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파. ⑮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자가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위탁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자가처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중간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중합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매립시설[1201], 차단형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중합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매립시설[2206]

※ 비고: 국가소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하. ⑮확인: 배출자, 운반자, 중간·최종 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시 기재사항 및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 거. ⑮검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

<노란색>

2	중간·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중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 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m²)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중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 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m²)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종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 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 . .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m²)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2008.12.31>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상호(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 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				
업 종		허가번호			
년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천원)					
용역이행능력 평가세부내역	실 적 평가액	자본금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경 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천원)					
시설 · 장비					
기술능력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협 회 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⑨시설·장비설치예정지	
	⑩사무실예정지	(부지면적 : m ²)
	⑪사업착수에정일	⑫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장비 설치 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사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 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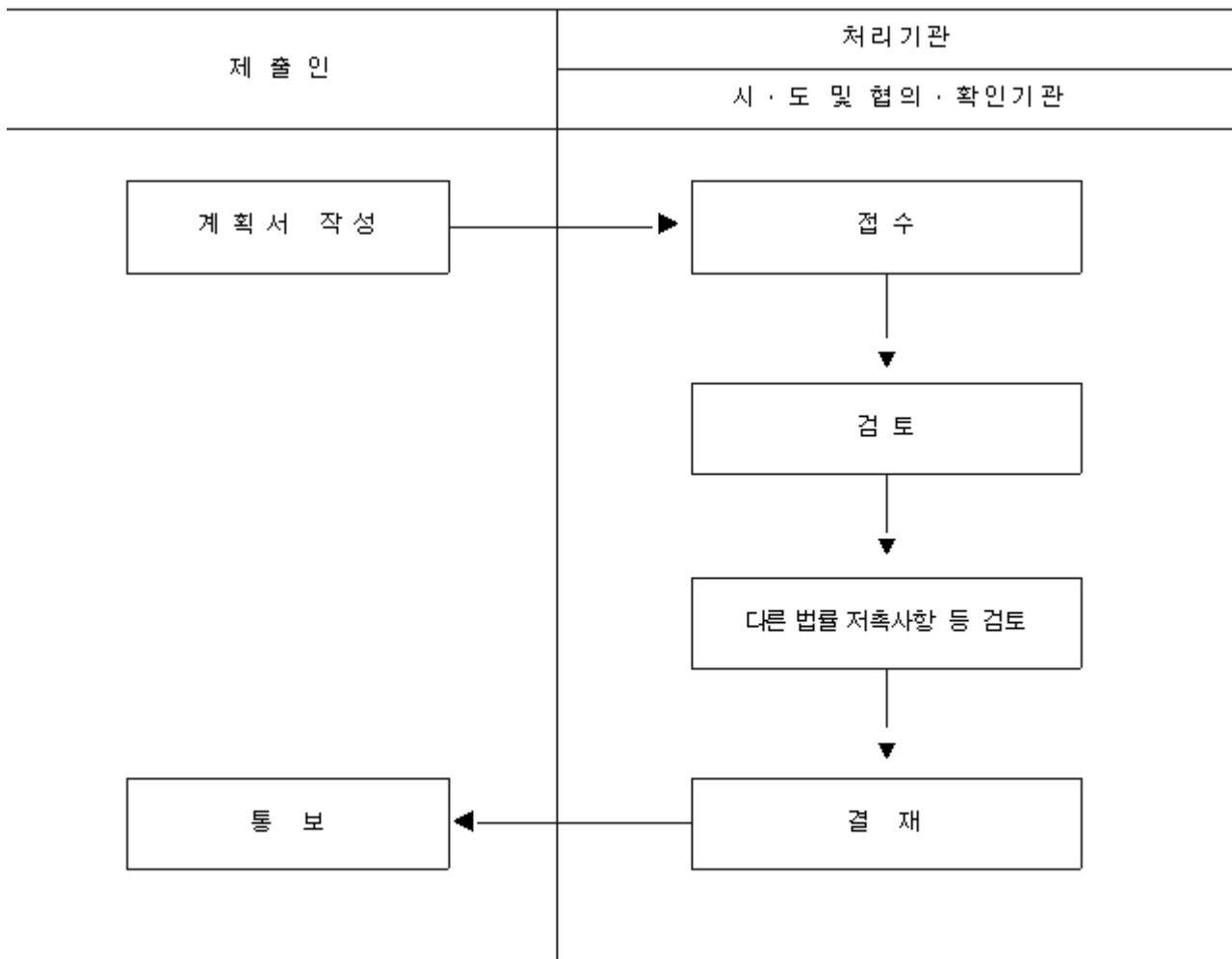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작성방법

-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팔호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⑨란은 시설·장비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⑬란중 시설·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내지 ⑥, ⑨ 및 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업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장비 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 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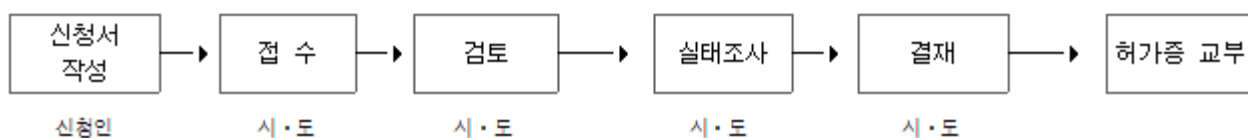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p>가. 허가신청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p>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p>수수료</p> <p>신규: 40,000원</p> <p>변경: 15,000원</p>
------	--	--

작성요령

1. ㉔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팔호 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㉕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㉖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㉑부터 ㉔까지, ㉗ 및 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㉑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⑥업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일	. . .	⑨최대 보관량	

⑩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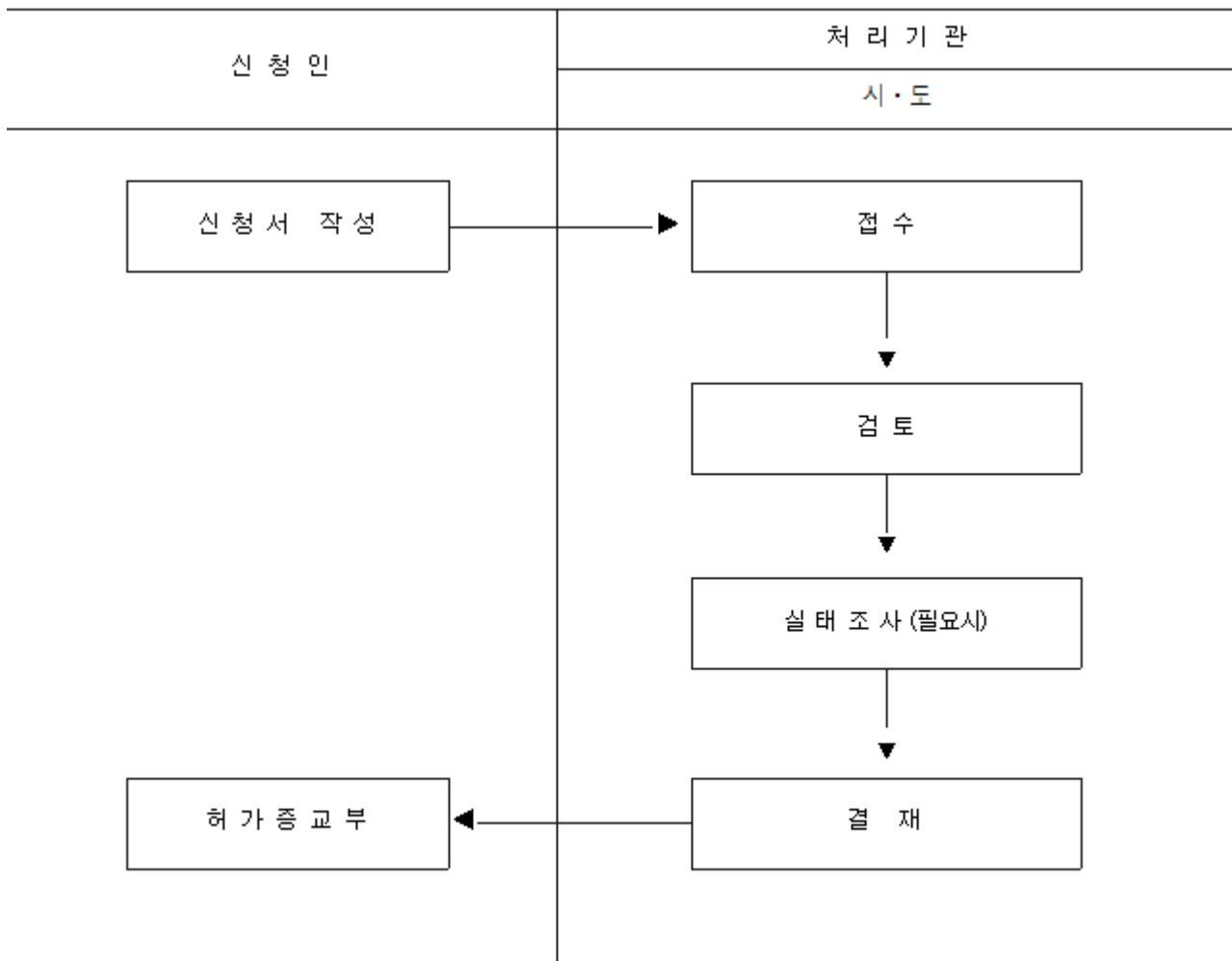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작성방법

-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팔호 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 ⑩란은 변경신고 대상 중 변경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자본금(자산평가액)			
장비			
허가조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 사항>

일련번호	일자	위반내용	일자	처분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부지규모	(㎡)	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시설·장비			
기술능력			
허용보관량	(톤)	보관시설면적	(㎡)
허가조건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 도지사</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8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auto;"> 직인 </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 사항>

일련번호	일자	위반내용	일자	처분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⑧착공예정일			⑨준공예정일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능력)	⑫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에상량 (톤/일)	⑭방지 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현장내 사용 용도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1항
☐ 제16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승인
☐ 변경승인 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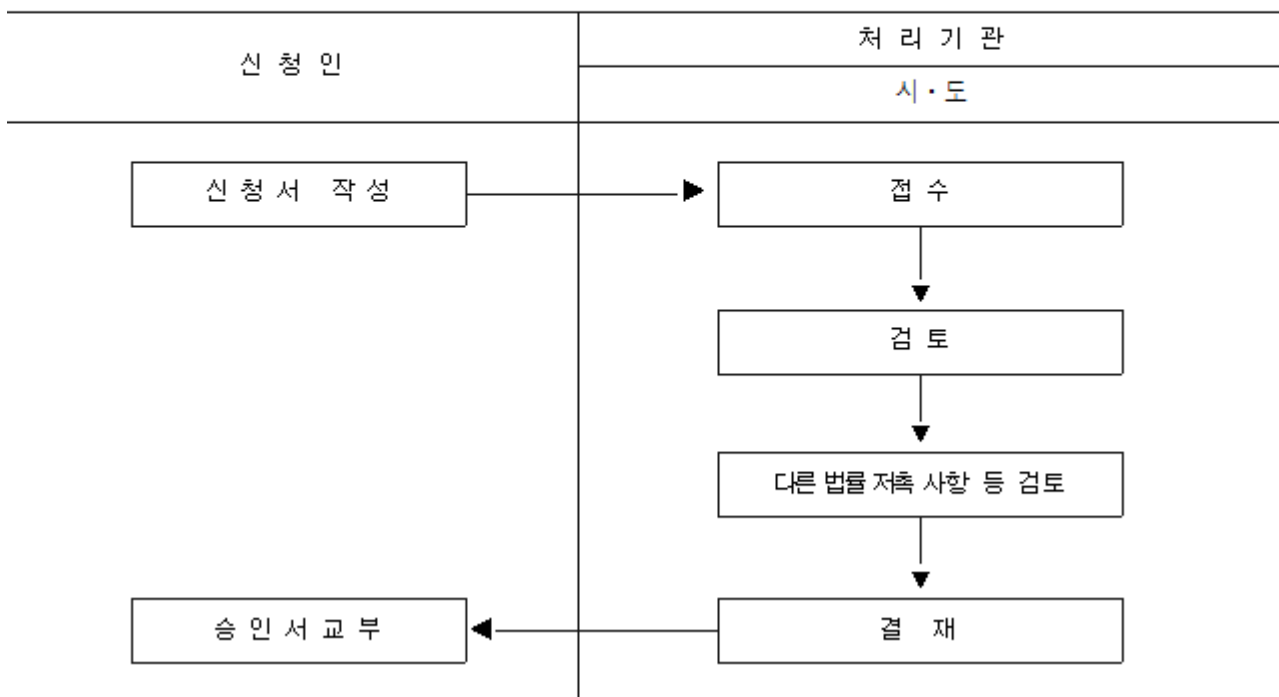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작성 방법

1. 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㉔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㉔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 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 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내역				
처리시설명	처리시설규격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에상량 (톤/일)	방지시설명
승인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취득)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1.9>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⑥업종	
-----	--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⑧착공예정일		⑨준공예정일	
--------	--	--------	--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능력)	⑫처리대상건설폐기물 의 종류	⑬처리에상량 (톤/일)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설치목적	
-------	--

⑰건설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반입량(톤/일)

⑱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⑲변경사유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제18조제3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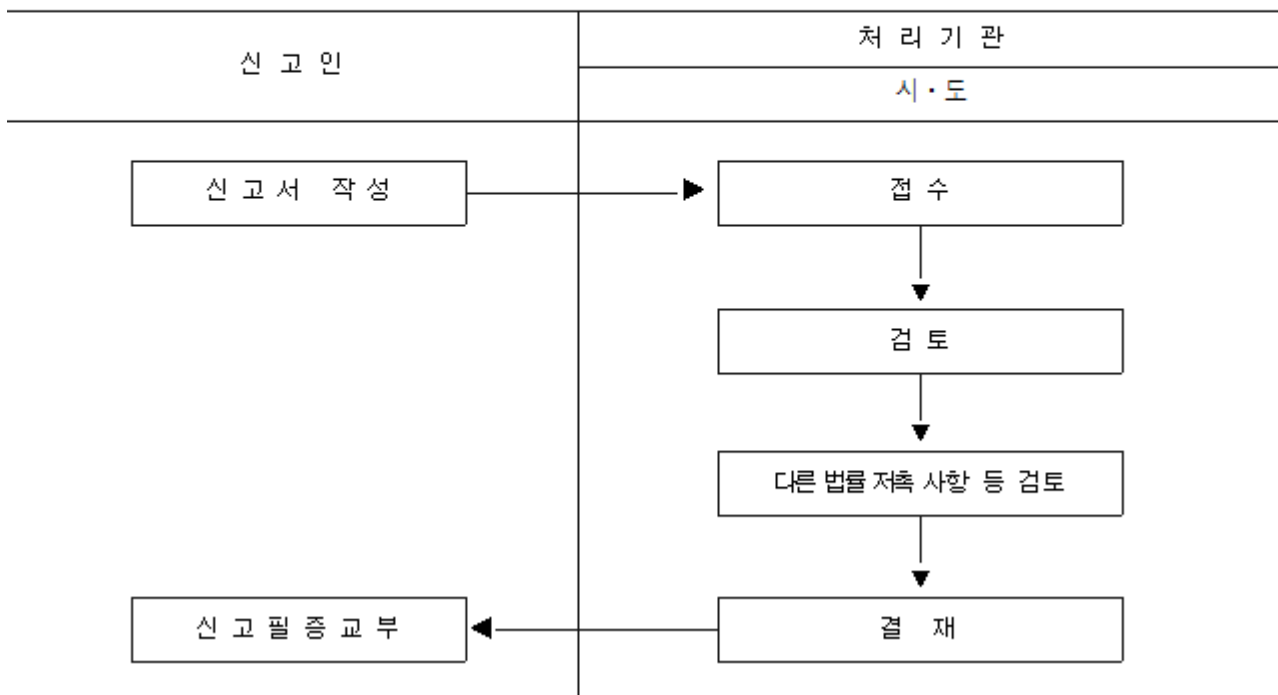
(뒤쪽)

구비서류	<p>가. 설치신고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p>나. 변경신고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㉔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㉔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 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 종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내역

처리시설명	처리시설규격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에상량 (톤/일)	방지시설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div>(전화번호:)</div>			
⑥처리시설소재지		<div>(전화번호:)</div>		
⑦업종		⑧허가·승인·신고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처리예상량 (톤/일)	⑫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사용개시 예정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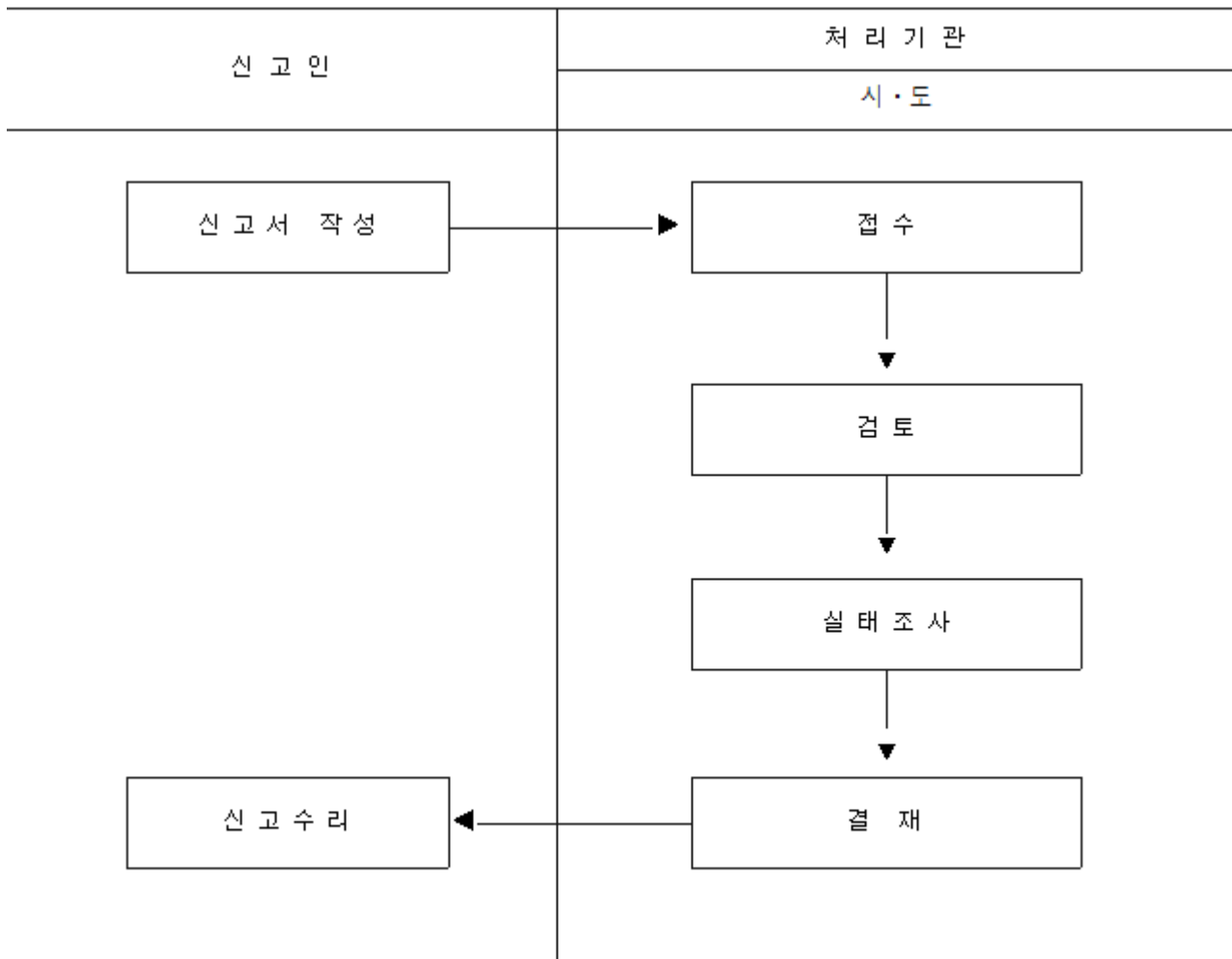
작성요령

- ①상호(명칭)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⑧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2.13>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생년월일		
	⑩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대상	구분	[]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승인·신고일자		
	⑬허가·승인·신고번호			
승계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 건설폐기물처리업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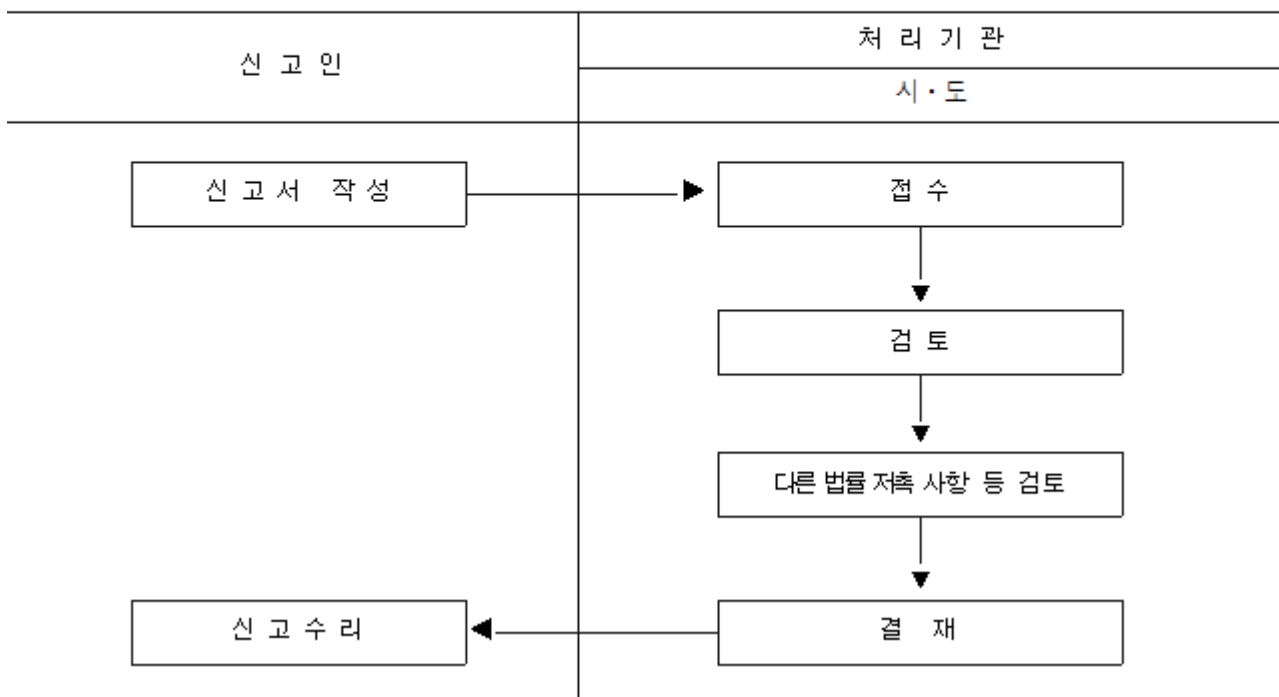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작성 방법

1. ①내지 ⑤의 신고인 기재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내지 ⑬의 승계내역은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⑫허가·승인·신고일지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일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⑬허가·승인·신고번호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의 경우에는 승인·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 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mm×257mm (보존용지(2중) 70g/m²)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수 집 내 역						③위 탁 처 리 내 역						④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 현장명	배출현장 소재지	성상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 업소명	업종	처리업소 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연월일	②위탁내역						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보관량	④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결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소재지	성질과 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누계	파쇄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생산		그 밖의 처리사항		중간처리량누계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종류	양	방법	양								

364mm×257mm (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질과 상태는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별 처리현황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처리내역				
	②건설폐기물의 종류	③처리방법	④금일처리량	⑤처리누계	⑥처리후 발생한 폐기물량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동내역

⑧건설폐기물처리시설구분		⑨운전자 근무내역				⑩가동시간			
		시 간	운 전 자	(서명 또는 인)	금 일				
⑪시설운영 및 관리상태									
⑫특 기 사 항									
⑬약품·연료·용수사용량									
⑭ 시설별	⑮약품사용량(kg)			⑯연료사용량(톤)			⑰용수사용량(톤)		⑱방류
	종 류	금 일	누 계	종 류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⑲그 밖의 시험분석 결과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순환골재 등 생산·판매대장

(①순환골재의 규격 :)

(단위 : 톤)

연월일	②생산내역		③판매내역				보관량	결재	
	생산량	생산량 누계	판매량	재활용용도	판매처	판매량 누계			

364mm×257mm[백상지 80g/㎡]

(뒤 쪽)

(④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종류 :)

(단위 : 톤)

연월일	⑤생산내역			⑥판매내역				보관량	결재	
	순환골재 재활용률(%)	생산량	생산량 누계	판매량	사용용도	판매처	판매량 누계			

(뒤 쪽)

(⑦순환토사)

(단위 : 톤)

연월일	⑧생산내역		⑨판매내역				보관량	결재	
	생산량	생산량 누계	판매량	재활용용도	판매처	판매량 누계			

(뒤 쪽)

(⑩순환진출)

(단위 : 톤)

연월일	⑪생산내역		⑫판매내역				보관량	결재	
	생산량	생산량 누계	판매량	재활용용도	판매처	판매량 누계			

작성요령

<작성요령>

1. 대장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 순환골재의 규격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순환토사 및 순환진출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토사, 순환진출을 생산하거나 판매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생산량 및 판매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
3. 법 제27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②란, ⑤란, ⑧란, ⑪란의 생산내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 휴업
건설폐기물처리업 []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허가번호	
[] 휴업일자 ⑨ []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⑩ 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사유 ⑪ []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을 신고합니다.
 [] 재개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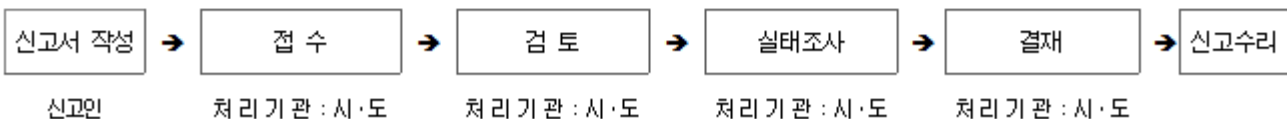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뒤 쪽)

<작성요령>

1.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⑩란 중 1. 시설명의 종류는 해당 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란 중 1.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 중 3.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파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⑪란 중 5.의 위탁처리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자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재활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내역, 수집·운반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년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계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설치 승인일자		사용 개시일자		자본금	
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중간처리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파쇄분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소각	그 밖의 처리 방법	
총계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자 (서명 또는 인)</p> <p>사도지사 귀하</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 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1] 고상, [2] 액상)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 중 수탁내역,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12.13>

[년도] 순환골재 등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용]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자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 매 및 보 관 내 역				
순환골재규격	생산량(톤)	판매량(톤)	재활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	
총 계						
⑨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 매 및 보 관 내 역				
종류	순환골재 재활용률(%)	생산량(톤)	판매량(톤)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
총 계						
⑩순환토사 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 매 및 보 관 내 역				
	생산량(톤)	판매량(톤)	재활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	
총 계						
⑪순환진흙 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 매 및 보 관 내 역				
	생산량(톤)	판매량(톤)	재활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	
총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요령

1. 판매처 기재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㉔란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㉕란은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중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로 기재)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 ⑨란 중 규격은 5mm, 6mm~25mm, 26mm~50mm, 51mm~75mm, 76mm~100mm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 ⑨, ⑩란 중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12.1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①공사명				②의무사용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③발주자				④전화번호			
⑤착공일				⑥준공예정일			
⑦공사금액 (만원)				⑧공사위치			
⑨전체 천연골재 사용계획	용도	규격	소요량(톤)	⑩전체 콘크리트· 아스콘 제품 사용계획	용도	규격	소요량(톤)
⑪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규격	소요량(톤)	공급업체	소재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⑫미사용 사유 (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2010.6.9>

계 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예정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규격	소요량(톤)	공급업체	소재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 사유 (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직인</p>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2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작 자 : 정윤서

메일주소 : arbil1003@naver.com

제작일자 : 2016.1.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